

경찰단계에서의 범죄소년 다이버전을 위한 비행성 평가절차의 재범예측력 연구*

이 수 정⁺
경기대학교

국내의 경우 2003년도부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개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를 유도하는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시도하고 있다.¹⁾ 하지만 아직 경찰단계에서의 전환정책이 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현재는 시범시행의 과정만을 거치고 있는 단계이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상반기까지는 전국의 2개 경찰서에서 소년범들의 비행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전국의 다섯 군데 경찰서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행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범 시행된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시 범죄심리사에 의해 면담된 소년범죄자의 자료를 통하여 그동안의 범죄심리사 개입과정의 실패를 파악하고 추후 이 제도의 확대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 전국 5개 경찰서에서 범죄심리사들이 면담한 소년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6년도 말에 재범추적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소년대상자들의 재범예측에 현행 조사절차가 나름의 효과성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재범횟수를 예측함에 있어 소년의 전과력은 가장 유의한 예측력을 발휘하였다. 경찰서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난 후 재범을 저지르기까지의 시간을 통제할 경우에는 결손가정 여부가 소년들의 재범을 더 빨리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예측모형의 재범예측력은 비교적 미미한 편이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평균 2년 동안의 장기종단 추적을 통하여 범죄소년들의 재범행위를 예측하는 위험요인들을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주요어 : 경찰 소년다이버전, 비행성평가, 재범예측

국가나 시대를 막론하고 연령별 범죄 발생율은 10대 초반에 급증하기 시작하여 17세를 전후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Farrington, 1986; Hirschi & Gottfredson, 1983). 이런 현상은 심신의 미숙함, 판단력과 자기통제성 부족, 단순하고 충동적인 청소년기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경우 그것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수가 많으며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이유에 기인한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성인의 그것처럼 기질화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처벌보다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각국에서는 소년 범죄자들을 성인 범죄자들과 구분하여 소년법을 제정하고

* 본 연구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금(KRF-2004-074-HS0009)으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이수정,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전화 : (031) 249-9198,

E-mail : suejung@hanmail.net

1) 본 논문에서는 소년에 대한 전환정책과 다이버전을 동일한 용어로 간주하고 문맥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한다.

그에 따라 처우함으로써 소년범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 범죄자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인 범죄자들과 구분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되며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처우를 마련하여 소년의 욕구에 적합한 개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점을 법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소년범죄에 대하여서는 일반 형사소추 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 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즉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범들에 대하여서만 형사처벌을 집행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는 소년범들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교육적 목적의 전환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에 비하여 특이한 점은 국내의 경우 범죄소년에 대한 전환정책은 모두 검찰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소년에 대한 전환정책을 경찰단계에서부터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이 좋은 예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경찰단계에서부터 범죄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전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법무부, 2005).

아일랜드의 경찰은 청소년연계기구(Juvenile Liaison Schemes)를 조직하고 초범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다이버전인 경고 조치를 집행하며 검찰은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 대해서만 경고조치를 하는 등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이버전을 실시한다. 덴마크와 스코틀랜드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경찰의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복지기관 등 민간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소년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사실 조사와 처분결정을 구분하여,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년에 대한 사실조사에서는 소년의 사회적/심리적 환경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후 소년법원은 적절한 처분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범죄통제에 있어 지역사회경찰(communitary policing)모델을 도입한 바 있다. 미국의 경찰은 소년들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검찰로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약 5-10% 정도의 소년들만을 기소한다. 하지만 그 이외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 대하여서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한다(김희주, 공은경, 이수정, 2005). 뉴욕의 Teens on Patrol이나 워싱턴의 Community Opportunities Program for Youth는 이들 경찰단계에서의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좋은 예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는 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국가의 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에 의해 관리되며 이 기구는 1974년에 제정된 미국 의회의 소년사범과 비행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OJJDP는 소년사범정책의 포괄적 방향만을 제시하고 주정부나 지자체단체가 지역사회에 적합한 효과적인 소년범죄 예방대책이나 개입방안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개별 소년들의 재사회화 활동을 집행한다는 것이다(이순래, 2006).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소년에 대한 전환정책을 경찰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지되고 있다. 이는 소년의 재범 방지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적 형태의 조기개입이 효과적이라는 가정에 기인한다. 조기개입의 효과성은 사실상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근거한다(Reynolds, Suh-Ruu, & Topitzes, 2004). 예컨대 아동이나 청소년의 인지능력은 상당 부분 성인의 그것보다는 미성숙하기에 잘못된 행동의 발생 초기에 개입할수록 선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의 감수성이 급격히 떨어져 훈계나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소년의 범죄는 많은 경우 스스로의 의식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는 환경의 결핍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성인에 비하여 충동성이 높은 소년들은 환경의 결핍을 견디기 힘들며 따라서 장기적인 목표의 성취보다는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Dembo & Walters, 2003).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원론적으로 보더라도 범죄발생 후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재범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란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 때문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조사·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 같은 취지에 근거하여 2003년도부터 경찰단계에서 전문가가 개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를 유도하는 예비적 의미의 경찰 다이버전을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시범시행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범 시행된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시 전문가에 의해 면담된 소년범죄자의 자료 중 일부를 통하여 그동안의 전문가 개입과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이 제도의 확대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진단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비행성평가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2004년도 상반기까지는 두 곳의 경찰서에서,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두 곳 이외에 세 곳의 경찰서에서 추가로 시행되었다. 2005년도 하반기부터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시행하던 비행성평가를 전국의 50개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하였다.

비행성평가는 추후 전문가의 개입 수준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전 진단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현재는 평가과정을 훈련받은 범죄심리사들에 의하여 비행측발요인조사서(이수정, 조은경, 2005)와 종합성격검사자인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Morey, 1991)가 실시되고 있다. 범죄심리사는 범죄사건의 내용 이외에 범죄력 등을 토대로 비행측발요인조사서를 평정하고 피면담자의 성격특성을 평정하여 추후 재범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절차는 재범예측 기법 중 임상적 평가를 최대한 배제하고 통계적 지표를 토대로 객관적 평가를 내리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던 자료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의 비행성평가 자료이다. 만일 경찰단계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행성평가가 제대로 고안되어 시행되고 있다면 소년들의 재범예측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즉 2006년도 말에 추적 조사된 소년들의 재범 여부를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수거한 비행측발요인조사서와 PAI 성격검사 결과가 유의하게 예측해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2003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 전국 다섯 곳의 경찰서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중 두 곳 경찰서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 2년 연달아 비행성평가

를 실시하였으며 세 곳 경찰서는 비행성평가가 확대 시행된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 이를 시행하였다.

다섯 곳 경찰서에 입건된 조사대상자 310명 중 비행측발요인조사서와 PAI 검사의 하위요인 점수, 그리고 2006년도 말 재범사실 여부가 모두 확보된 사례는 249건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중 남자는 220명(88.4%), 여자는 29명(11.6%)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15.67세(SD=1.62)였다.

분석에 포함되었던 249명의 죄명은 절도(61명, 24.5%)와 특수절도(67명, 24.8%) 및 폭력(67명, 24.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의 소년전과는 초범이 190명(76.3%)으로 가장 많았고 재범이 40명(16.1%) 삼범 이상이 17명(6.8%)이었다.

측정도구

비행측발요인조사서

비행측발요인조사서는 소년범죄자의 비행측발요인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이다(이수정, 조은경, 2005). 45개의 강제선택형 문항들을 평정하게 하였던 비행측방요인조사서는 45점을 총점으로 구성된다. 비행측발요인조사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가족의 구조, 가족의 기능, 학교적응, 가출경험, 전과 및 범행특성, 개인적 위험요인 등이다. 이들은 최근 위험성 평가도구들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권고되고 있는 통계적(actuarial) 방식을 택하였다([http://www.johnhoward.ab.ca/PUB/PDF/C21.pdf#search`actuarial%20risk%20assessment`](http://www.johnhoward.ab.ca/PUB/PDF/C21.pdf#search%20risk%20assessment)). 즉 평가자들이 문항들에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평가자들이 사건기록과 면담 후 각 문항에 답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비행측발요인조사서의 내적 합치도는 .86, 평가자간 신뢰도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정, 조은경, 2005).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소년들의 비행측발요인조사서 총점은 0점에서 31점까지 골고루 분포하였다. 비행성 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청소년은 대부분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었다. 따라서 비행측발요인조사서의 중간점인 22점보다 아래 점수를 받은 피조사자들은 240명(96.4%)으로 대부분이 이에 포함되었다. 이 중 저자들이 재범가능성의 절단점으로 추천한 8점미만을 받은 피조사자들은

표 1. 비행축발요인조사서

1. 가족의 구조 ()점 가정 결손 여부 및 생계 담당 보호자 등 4문항	4. 가출경험 ()점 가출경험에 대한 3문항
2. 가족의 기능적 역할 ()점 가정불화, 학대, 애착, 전과자 유무 등 5문항	5. 비행전력 및 환경점수 ()점 전과 및 본 범 내용, 조발비행 여부 등 10문항
3. 학교생활 ()점 무단결석, 적응문제, 진학의지, 교우관계 등 6문항	6. 개인적 위험요인 ()점 음주, 약물, 성격형, 준법의식, 책임감 등 17문항

123명(49.4%)이었으며 이들이 궁극적으로 다이버전의 대상자군이 될 것이다.

가족의 구조 :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피조사자들의 가족의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양부모가 모두 계시는 청소년들은 145명(58.2%), 모친이나 부친 중 한 분이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동거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104명(41.8%)이었다. 이는 일반 청소년 중 결손가정 비율(15.1%; 머니투데이 2006-07-14 06 : 00)에 비하여 이들 중 결손가정의 비율(41.8%)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추정하게 한다. 특히 피조사자 중 12명(4.8%)은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기능 : 가정의 기능에 대하여서는 가정에 가정폭력 등의 불화가 있다고 응답한 피조사자는 71명(28.5%)이었다. 특히 신체적 학대가 있다고 응답한 수는 38명(15.3%) 심리적 학대가 있다고 응답한 수는 24명(9.6%) 부모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응답한 수는 47명(18.9%)이었다. 부모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은 7명(2.8%)이었다.

학교적응 : 피조사자들 중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자는 60명(24.1%)이었다. 경로나 정확을 받은 적이 있는 피조사자는 75명(30.1%)이었으며 장기결석을 한 피조사자는 71명(28.5%)이었다. 피조사자들 중 이미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자들은 14명(5.6%)이었으며 앞으로의 진학계획에 대하여 미정이라고 답한 자는 33명(13.3%)이었다. 친구들 중 경찰서에 출입하는 비행친구들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159명(63.9%)이었다. 학교와 친구요인을 살펴 본 결과 두드

러진 점은 피조사자들 중 상당수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수가 비행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경험 : 피조사자들 중 일주일 이상 가출을 해보았다고 응답하였던 자는 39명(15.7%)이었다. 가출을 하여 친구와 함께 지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들은 71명(28.5%)이었으며 40명(16.1%)은 쪽방 등에서 가출하여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피조사자들 중 약 20%의 청소년들이 가정을 이탈하여 생활해 본 적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가출이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재비행 위험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 추정된다.

전과 및 범행특성 : 피조사자들 중 훈방까지를 포함하여 경찰서에 입건되었던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249명 중 91명(36.5%)이었다. 이들 중 40명(16.1%)은 폭력 전과가 있었고 유죄판결을 받은 청소년은 29명(11.6%)이었다. 피조사자들 중 소년원 등에 시설수용이 되었던 청소년은 한 명도 없었다. 보호관찰을 위반한 적이 있는 자들은 8명(3.2%) 있었다.

본 범죄의 경우 대인피해는 75명(30.1%), 사전에 모의한 경우가 58명(23.3%), 범행수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가 52명(20.9%), 12세에서 14세, 혹은 그 전 연령 등 조발비행 여부가 19명(7.6%)이었다. 이전의 전과력과 비교하여 점차적으로 죄질의 심각도가 진전하는 경우가 52명(20.9%)이었다.

개인적 위험요인 :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 내적 위험요인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조사 청소년들

표 2.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개인적 위험요인 빈도

	음주	분드 가스	약물 남용	게임 중독	성병 등	성 매매	책임감	죄책감	결과 인식	준법 의식	현실 목표	인지 손상	정서 불안	대응 능력	충동 탐색	분노	상답 태도
문제가 있음 (74.3%)	185 (1.2%)	3 (9.6%)	24 (12.4%)	31 (4.0%)	10 (1.2%)	3 (32.1%)	80 (45.4%)	113 (39.4%)	77 (30.9%)	61 (24.5%)	3 (1.2%)	63 (25.3%)	83 (33.3%)	110 (44.2%)	79 (31.7%)	22 (8.8%)	
문제가 없음 (25.7%)	64 (98.8%)	246 (90.4%)	225 (87.6%)	218 (96.0%)	239 (98.8%)	246 (67.9%)	169 (54.6%)	151 (60.6%)	172 (69.1%)	188 (75.5%)	246 (98.8%)	186 (74.7%)	166 (66.7%)	139 (55.8%)	170 (68.3%)	227 (91.2%)	

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의 결여 (45.4%)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인식에 있어 상당한 결핍(39.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우 충동적(42.4%)이고 환경에 대한 분노감(31.7%)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와 같은 측면은 가장 흔한 형태의 비행행위인 오토바이 절도와 폭주 등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성격상의 문제를 진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실시되는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Morey, 1991)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로서 총 3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타당성 척도, 11개의 임상척도, 5개의 치료고려척도, 2개의 대인관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검사의 반응양식은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평균을 50, 표준편차를 10으로 환산하는 T분포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인 규준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하위척도별로 .60에서 .88까지의 내적합치도를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6주를 기간으로 두고 획득된 검사 재검사 신뢰도 지수는 .32에서 .91까지의 상관계수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영환, 오상우, 홍상환, 박은영, 2002).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소년들의 PAI 성격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하위척도들이 T표준점수의 평균인 50 점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10점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소년범들의 PAI 성격검사 점수가 일반 청소년의 평균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들 중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경우 일부 하위 척도 상에서 유의한 차를 야기하였는데, 이는 결과분석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3. PAI 하위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icn (비일관성)	28.00	86.00	46.09	10.10
inf (저빈도)	26.00	76.00	48.61	9.58
nim (부정인상)	35.00	88.00	49.69	11.36
pim (긍정인상)	.00	75.00	48.95	11.96
som (신체화)	32.00	94.00	47.85	9.90
anx (불안)	28.00	85.00	47.24	10.94
ard (불안관련)	31.00	87.00	49.09	10.80
dep (우울)	32.00	83.00	51.14	11.14
man (경조증)	24.00	78.00	49.91	11.80
par (편집증)	27.00	76.00	48.06	9.63
scz (정신증)	24.00	80.00	45.55	10.59
bor (경계선)	24.00	83.00	50.09	11.14
ant (반사회성)	32.00	84.00	53.94	10.90
alc (알콜)	39.00	96.00	50.95	12.11
drg (약물)	39.00	75.00	49.98	8.60
agg (공격성)	28.00	90.00	52.53	11.52
sui (자살경향)	36.00	90.00	46.81	10.21
str (스트레스)	29.00	85.00	53.60	11.42
non (비지시)	28.00	78.00	47.28	9.60
rxr (치료거부)	.00	80.00	50.52	11.81
dom (지배성향)	26.00	79.00	52.56	9.44
wrm (온정성)	27.00	78.00	55.45	9.78

중속측정치 : 약 2년간 후의 재범 추적

피조사자들 중 평균 2년 후에 재 입건된 청소년들은 101명(40.6%)에 이르렀다. 이는 상당히 많은 수의 청소년

표 4. 재범 빈도

	빈도	%
0번	148	59.4
1번	76	30.5
2번	13	5.2
3번 이상	11	4.4
합계	248	99.6
결측	1	.4
합계	249	100.0

들이 재비행에 빠져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은 입건된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에서부터 최대 조사기간이었던 36개월 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까지 다양하였다. 평균 재범횟수는 1.40번(SD=.86)이었고 재범기간은 조사 후 1개월 이내에서 36개월까지로 평균은 11.1개월(SD=8.00)이었다.

결과분석

비행축발요인조사서 하위 요인 상에서의 재범자 특성

비행축발요인들에 있어 재범자와 비재범자들 간의 차를 알아본 결과, 다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소년들보다 더 장기간 학교를 결석하고 정서가 더 불안정하였으며 전에 경찰서에 입건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많았고 보호처분 중 규율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많았으며 폭력전과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재범자보다 약물남용도 더 많이 하였다.

표 5. 비행축발요인조사서에서 재범자와 비재범자의 *t* 검증

	재범여부	N	평균	표준편차	<i>t</i>
결손가정	0	147	.39	.49	.798
	1	101	.45	.50	
가정불화	0	147	.27	.45	.427
	1	101	.30	.46	
신체적 학대	0	147	.14	.34	.904
	1	101	.18	.38	
심리적 학대	0	147	.08	.27	.971
	1	101	.19	.33	
무 관 심	0	147	.16	.37	1.272
	1	101	.23	.42	
가족전과	0	147	.03	.16	.116
	1	101	.03	.17	
학 력	0	147	.05	.23	.166
	1	101	.06	.24	
장기결석	0	147	.22	.41	2.756**
	1	101	.38	.49	
학교 부적응	0	147	.24	.43	-.131
	1	101	.24	.43	
경고정학	0	147	.31	.47	-.433
	1	101	.29	.45	
진학미정	0	147	.11	.31	1.354
	1	101	.17	.38	
교우관계	0	147	.59	.49	1.793
	1	101	.70	.46	

표 5. 계속

	재범여부	N	평균	표준편차	
입건건수	0	147	.22	.41	6.317***
	1	101	.58	.50	
유죄판결	0	147	.06	.24	3.355***
	1	101	.20	.40	
소 년 원	0	147	.00	.00	
	1	101	.00	.00	
관찰위반	0	147	.01	.12	2.014*
	1	101	.06	.24	
폭력전과	0	147	.12	.32	2.375*
	1	101	.23	.42	
대인피해	0	147	.30	.46	.128
	1	101	.31	.46	
사전모의	0	147	.21	.41	1.030
	1	101	.27	.44	
비행수법	0	147	.22	.41	1.757
	1	101	.32	.47	
죄질심화	0	147	.18	.38	1.532
	1	101	.26	.44	
조기비행	0	147	.08	.28	-.357
	1	101	.07	.26	
가출유무	0	147	.13	.34	1.462
	1	101	.20	.40	
가출친구	0	147	.27	.44	.713
	1	101	.31	.46	
집단생활	0	147	.16	.37	-.102
	1	101	.16	.37	
음 주	0	147	.24	.43	.865
	1	101	.29	.45	
본드가스	0	147	.02	.14	-1.445
	1	101	.00	.00	
약물남용	0	147	.06	.24	2.300*
	1	101	.15	.36	
게임중독	0	147	.13	.34	-.243
	1	101	.12	.33	
성병 등	0	147	.03	.16	1.265
	1	101	.06	.24	
성 매 매	0	147	.01	.12	-.261
	1	101	.01	.10	
본법책임	0	147	.32	.47	.115
	1	101	.33	.47	
죄 책 감	0	147	.44	.50	.512
	1	101	.48	.50	
결과인식	0	147	.59	.50	.767
	1	101	.63	.48	
준법의식	0	147	.28	.45	1.296
	1	101	.36	.48	
현실목표	0	147	.23	.42	.945
	1	101	.28	.45	

표 5. 계속

	재범여부	N	평균	표준편차	
인지손상	0	147	.02	.14	-1.445
	1	101	.00	.00	
정서불안	0	147	.20	.40	2.329*
	1	101	.33	.47	
대응능력	0	147	.34	.48	-.382
	1	101	.32	.47	
충동탐색	0	147	.45	.50	-.207
	1	101	.44	.50	
분노	0	147	.32	.47	.065
	1	101	.32	.47	
상담태도	0	147	.10	.29	-.435
	1	101	.08	.27	

* $p<.05$, ** $p<.01$, *** $p<.001$
1 : 재범군, 0 : 비재범군

PAI 성격검사 상에서의 재범자 특성

PAI 성격검사의 임상척도 상에서는 재범자와 비재범자

표 6. PAI에서 재범자와 비재범자의 t 검증

	재범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som	0	140	48.01	10.38	-.260
	1	99	47.68	9.23	
anx	0	140	47.04	10.45	.418
	1	99	47.64	11.66	
ard	0	140	48.64	10.75	.840
	1	99	49.83	10.88	
dep	0	140	50.66	10.98	.883
	1	99	51.95	11.35	
man	0	140	49.27	11.75	.976
	1	99	50.78	11.93	
par	0	140	47.35	9.63	1.387
	1	99	49.10	9.63	
scz	0	140	45.42	10.49	.241
	1	99	45.76	10.82	
bor	0	140	50.11	10.84	.061
	1	99	50.20	11.57	
ant	0	140	53.39	10.70	1.027
	1	99	54.86	11.16	
alc	0	140	50.35	11.49	1.012
	1	99	51.95	12.97	
drg	0	140	49.14	8.57	1.871
	1	99	51.23	8.57	
agg	0	140	51.98	11.18	.951
	1	99	53.41	12.01	
sui	0	140	46.51	10.07	.604
	1	99	47.32	10.46	
dom	0	140	52.46	9.46	.112
	1	99	52.60	9.45	
wrm	0	140	55.40	10.25	.165
	1	99	55.61	9.15	

1 : 재범군, 0 : 비재범군

의 평균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범예측을 위한 회귀분석과 Cox 회귀분석

범죄소년에 대한 비행성 평가로 평균 2년 후의 재범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소년들의 평균 2년 후 재범율은 40.6%였다. 비행축발요인조사서의 요인별 점수와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성격검사의 하위요인 점수를 예측치로 하였을 때 2년 후의 재범 여부는 다음과 같이 예측되었다. 일단 재범의 총 횟수를 종속 측정치로 하여 단계선택 방식으로 회귀분석하여 예측모형을 산출하였을 때 가장 유의한 예측변수로 분석된 것은 소년들의 과거 전과력이었다. t 검정 결과와 일관되게 과거에도 경찰서에 많이 출입하였던 청소년들이 2년 후에도 더 많은 수의 재범을 저질렀다($F_{1, 233}=10.538, p<.001$).

표 7. 재범예측을 위한 회귀분석

	B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상수)	.498	.060		8.253	.000
전과횟수	.161	.050	.207	3.246	.001

하지만 제일 처음 재범을 저지를 때까지의 시간을 통제된 상태에서 소년들의 재범을 가장 먼저 촉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을 때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총 전과 수 대신 가족의 구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손가정의 자녀일수록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생존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모형의 $-2LL$ 는 719.79였으며 이에 대한 적합도 χ^2_{25} 는 23.09였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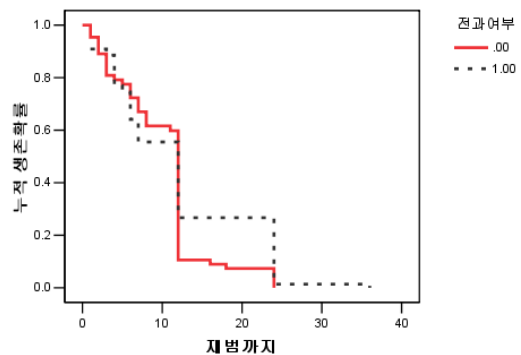


그림 1. 재범에 대한 생존분석 결과

표 8. 재범예측을 위한 Cox 회귀분석

	B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전과횟수	-.225	.125	3.270	1	.071	.798
가족구조	-.400	.201	3.947	1	.047	.670
가족기능	.236	.135	3.079	1	.079	1.266
학교관련	-.004	.130	.001	1	.978	.996
전과관련	.013	.086	.024	1	.877	1.013
가출관련	-.178	.174	1.046	1	.306	.837
개인요인	.071	.062	1.312	1	.252	1.073
som	.011	.023	.229	1	.632	1.011
anx	.008	.025	.103	1	.748	1.008
ard	-.028	.024	1.325	1	.250	.973
dep	.000	.016	.000	1	.998	1.000
man	-.031	.022	1.983	1	.159	.969
par	-.014	.023	.354	1	.552	.986
scz	.027	.023	1.343	1	.247	1.027
bor	-.002	.026	.004	1	.953	.998
ant	.030	.018	2.770	1	.096	1.030
alc	.002	.010	.030	1	.864	1.002
drg	-.003	.015	.030	1	.862	.997
agg	-.003	.021	.017	1	.898	.997
sui	.009	.020	.214	1	.644	1.009
str	.008	.015	.313	1	.576	1.008
non	-.016	.017	.798	1	.372	.985
rxr	.023	.014	2.540	1	.111	1.023
dom	.030	.018	2.796	1	.095	1.030
wrm	-.007	.018	.171	1	.679	.993

그림 1은 조사를 받고 약 10개월이 지난 후부터 재범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분석을 통한 재범예측력

범죄소년의 평균 2년 후의 재범을 예측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예측변수들은 과거 전과횟수와 통계적 위험평가 방법으로 수거된 비행축발요인조사서, 그리고 PAI 성격검사 등이었다. 이들의 상대적인 재범예측력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범죄학의 일반적인 재범예측 연구(Carroll, Wiener, Coates, Galegher, & Alibrio, 1982; Chaiken & Chaiken, 1983)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과횟수의 재범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축발요인조사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재범을 예측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PAI 성격검사의 결과는 범죄소년들의 재입건 사실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주지는 못하였다.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경찰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비행성을 평가하고 상담을 하는 소년다이버전 제도를 적용받았던 소년범죄자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평균 재범 추적기간을 2년여로 하여 이들 중 재범을 저지른 자들과 그렇지 않았던 자들의 특성을 비교하고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발견된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선 소년의 재입건율은 적어도 40%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물론 재범을 기소 여부나, 유죄 판결 여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내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재범이 발각되는 시점을 입건 시점으로 보자면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범죄소년들의 재범율은 40%에 이르렀다. 이는 최근 범죄소년의 재범율이 이미 30%를 넘어섰다는 세간의 주장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범죄학 분야(Carroll, Wiener, Coates, Galegher, & Alibrio, 1982; Chaiken & Chaiken, 1983)에서 재범예측은 불가피한 절차이고 따라서 재범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탐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재범의 횟수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이전의 전과력이 무엇보다도 우수한 예측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ROC분석의 결과는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범죄소년의 재범을 예측함에 있어 어떤 심리측정학적 도구보다도 과거의 범죄력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가 됨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재범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을 통제된 경우에는 재범으로 제일 먼저 빠져드는 청소년들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들은 경미한 범죄로 경찰서에 입건되었다가 훈방되는 소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다시 재범하게 되는지에 대한 실태를 대략 추정하게 한다.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환경의 결핍이 소년의 재범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만일 이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개입을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가정환경의 보호기능을 무엇보다도 우선 주목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재범예측 결과는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데, 현행 재비행성 평가에 있어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의 결과를 꼭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그 어떤 변수들보다 예측력이 낮다. 따라서 재범예측만을 위한 목적이

표 9. 변수 별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분석결과

예측변수	AUC (Area Under Curve)	표준오차	유의확률	근사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과횟수	.644	.037	.000	.571	.716
비행촉발요인조사서 총점	.598	.037	.009	.526	.670
som	.496	.038	.926	.423	.570
anx	.511	.039	.771	.435	.587
ard	.532	.038	.401	.457	.607
dep	.533	.038	.385	.458	.608
man	.535	.038	.351	.461	.609
par	.547	.038	.216	.473	.621
scz	.504	.038	.921	.429	.578
bor	.487	.038	.741	.413	.562
ant	.540	.038	.292	.465	.615
alc	.528	.038	.457	.453	.603
drg	.575	.037	.049	.501	.648
agg	.524	.038	.526	.449	.599
sui	.527	.038	.470	.453	.602
str	.498	.038	.963	.423	.573
non	.529	.038	.441	.455	.604
rxr	.474	.039	.495	.398	.550
dom	.494	.038	.876	.420	.569
wrm	.511	.038	.766	.437	.585

라면 굳이 PAI 등의 자기보고식 성격검사는 크게 유용성이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기보고식 성격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소년에 대한 비행성평가를 다만 재비행 예측을 위해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단계에서 소년을 지도하는 경우 무엇인가 상담의 방향설정을 위한 진단적인 도구가 필요하며 그런 목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PAI 성격검사의 용도는 의미가 있다. 현재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에 대한 시범시행은 범죄심리사들에 의한 단순한 비행성평가를 넘어서서 범죄소년들에 대한 멘토링까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선도를 위해 성격검사는 꼭 필요하다. 멘토링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범죄소년들의 환경결핍을 대체하기 위한 시도로도 볼 수 있는데, 현재 범죄소년에 대한 멘토링 사업은 200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5개 지역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된 바 있다. 5개 지역에서 당사자 상담 뿐 아니라 부모 상담 등을 포함한 전문가 멘토링에 참여하였던 범죄소년들은 2007년도 1월 달까지 아직 단 한 명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수정, 미출판 보고서).

경찰단계에서 범죄소년들에게 다이버전을 실시하려는

제도는 2004년도 ‘청소년 선도 및 전과자 줄이기’ 세미나에서 검찰의 공공연한 반대에 부딪혔었다. 검찰이 민감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던 이유는 경미한 소년범죄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이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 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제도는 이와 같은 부처간 논쟁과 실질적으로 별다른 관련성이 없음을 깨닫게 한다. 문제는 소년에 대한 전환정책을 어느 부처에서 주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범법행위라는 문제행동을 야기하였을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입을 하느냐 하는 것이며, 이들 개입 여부는 형사소송 절차와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적법절차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같은 문제는 현장에서 개입 과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탐색하여 개입의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최근 여러 연구자들(김지선, 2006; 김은경, 2006)은 국내의 방입형 다이버전 제도가 소년들의 재범억제에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점을 재차 지적하였다. 거의 40%에 이르는 소년들의 공식적 혹

은 비공식적 재범율은 이제는 현행 소년사법 제도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한다. 이 같은 점을 광범위하게 고려한다면 현재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한 조기개입 제도는 또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도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환, 오상우, 홍상황, 박은영 (2002). PAI의 임상적 해석. 학지사.
- 김은경 (2006).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발전방향과 과제. 형사정책연구소식, 98, 15-23.
- 김지선 (2006). 청소년범죄의 발생과 처리실태. 형사정책연구소식, 98, 2-7.
- 법무부 (2005).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 이수정 (2007).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전문가 참여 1 : 1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보고. 미출판 보고서 : 경찰청.
- 이수정, 조은경 (2005).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축발요인 조사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1), 27-42.
- 이순래 (2006). 미국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의 최근 동향. 형사정책연구소식, 98, 44-49.
- 김희주, 공은경, 이수정 (2005). 소년사법처리 절차에 있어 경찰의 역할 : 미국 선도 경찰관을 통한 한국의 소년보호정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 187-221.
- Carroll, J. S., Wiener, R. L., Coates, D., Galegher, J., & Alibrio, J. J. (1982). Evaluation, diagnosis, and prediction in parole decision making. *Law & Society Review*, 17(1), 199-228.
- Chaiken, M. R., & Chaiken, M. (1983). Redefining the Career Criminal: Priority Prosecution of High-Rate Dangerous Offenders. *Issues and Practices*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pril.
- Dembo, R. & Walters, W. (2003). Innovative approaches to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the needs of high risk youth. *Substance Use & Misuse*, 38(11), 1713-1738.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Professional Manual*. Florida, U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Reynolds, A. J., Suh-Ruu, O., Topitzes, J. W. (2004). Paths of effects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on educational attainment and delinquency: A confirmatory analysis of the Chicago child-parent centers. *Child Development*, 75(5), 1299-1328.

Recidivism Prediction Based on Risk Assessment Procedure for Juvenile Diversion at Police

Soo Jung Lee

Kyonggi University

Juvenile diversion at police has been attempted with expert intervention since 2003. However, legislation for this system has not been made in Korea. A preliminary risk assessment procedure for juvenile offenders has been performed from 2003 to early 2004 at two police stations. This risk evalu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expert intervention for juvenile diversion. From late 2004 to early 2005, three more police stations have been involved. Now, fifty police stations are applied this juvenile risk evaluation and aftercare system nation-widely.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iveness of the risk evaluation system to predict juvenile recidivism. Data collected from 2003 to 2005 at five police station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recidivism data were searched at the end of 2006. The results showed criminal records of juvenile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number of committing crime. When the time to the first recidivism was controlled family brokenness was a facilitating factor pushing juveniles into crime. ROC analysis presented that predictive powe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weak.

Keywords: Juvenile Diversion at Police; Risk Assessment for Juvenile Offenders; Recidivism Prediction

원고접수 : 2007년 3월 13일

심사통과 : 2007년 4월 17일